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교육연수위원회라 함은 회원의 상담 교육, 전문상담사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연수, 교육연수기관 인증 및 관리, 교육연수기관의 프로그램 인증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상담학회 산하 위원회이다.

제3조 【역할】

- ① 한국상담학회가 국내·외 상담 관련 연구소나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도와 학회 및 기관이 상호 질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 ② 한국상담학회 회원이 상담 관련 분야에서 상담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수행을 돕기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 ③ 한국상담학회 회원들이 자격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경험을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게 한다.
- ④ 교육연수기관이 상담 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연수프로그램과 교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사업】

- ① 상담학회 회원에게 상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및 갱신 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 ③ 교육연수기관 인증 및 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④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중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학회원들이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교육·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2장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 관련 연수】

교육연수위원회는 한국상담학회 회원이 상담 관련 분야에서 상담이론 및 기초지식을 갖추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상담사 자격 연수】

교육연수위원회는 전문상담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게 자격 연수를 제공한다.

제3장 교육연수기관 관련 사항

제7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 ①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연수위원회로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을 한다.
- ②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단,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분과학회장 혹은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감독자 이외의 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③ 연수기관의 강사는 한국상담학회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한다.
- ④ 교육연수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외).
-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 ⑥ 교육연수기관에는 최소한 수련감독자 2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둔다.
- ⑦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둘째 주부터 2월 둘째 주, 하반기는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로 한다.

②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 중 택1
 2.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은 제외) 1부
 3. 대표자의 자격 관련 서류 1부
 - 3-1 대표자,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3-2.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상담사 1급 소지자가 아닌 경우
 - 3-2-1. 박사학위증명서 1부
 - 3-2-2.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4.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 4-1. 정관
 - 4-2. 조직표
 - 4-3. 장단기 사업계획서
 5.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에서 교육연수기관으로 신청할 시 대표자 또는 수련감독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서류(임용 잔여기간이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경우 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교육연수기관 인증이 불가능함) 1부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
 7. 교육연수기관 심사비(10만원)
- ③ 제출 서류로 인증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공지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회원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⑤ 교육연수기관의 권리

1.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명칭 사용의 권리
2.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또는 수련 과정 개설의 권리

⑥ 기타

1. 교육연수기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상담사 교육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을 제공한다. 기관이 다른 자격증을 발급 혹은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때 한국상담학회와 관련된 것으로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상담학회와 관련없는 활동에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의 명칭을 오용하는 경우,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 교육연수기관 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출한 일체의 서류와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 1) 주소변경(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 2) 대표자 변경
 - 2-1) 공공기관: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 2-2) 일반기관: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3) 기관 명칭 변경
 - 3-1) 공공기관: 명칭 변경 관련 공문
 - 3-2) 일반기관: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 4) 수련감독자(수련감독자 자격증)

위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본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5.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가 수련감독자의 자격을 상실(예:징계 등) 또는 정지(예: 회원유지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자격도 정지 또는 상실된다.
6. 교육연수기관은 기관의 자격 변동사항을 소속 수련생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
7.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아래 내용을 일시 정지한다.
 - 1)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 2)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의 사항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연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8. 교육연수기관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정지한다. 정지된 기관은 미납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재인증을 거쳐야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9. 교육연수기관의 분원 또는 분소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원(본부)과는 별도로 교육연수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4장 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제9조 【교육 프로그램 인증】

- ① 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연수를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하고 인증받는 것을 말한다. 학회원들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이수증을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최소 1개월 전에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청방법을 통해 교육실행 기관, 강좌명, 강좌 시간, 간략한 내용, 강사명(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번호)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인증과정을 거쳐 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번호는 학회 홈페이지에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공지한다.
- ③ 강사가 한국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의 자격을 소지한 강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수기관은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 및 발급번호, 교육연수기관명 및 기관 직인, 강좌명, 강사명(본 학회 자격증 및 유효기간), 교육일시, 이수시간, 교육생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수회 또는 공개사례발표회 구분을 포함한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이수증의 크기는 A4용지로 한다.

제5장 교육연수위원회

제10조 【설치】 본 학회의 상담 관련 교육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제11조 【기능】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제1장 제3조 【역할】에 의거한다.

제12조 【조직과 구성】

- ① 교육연수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은 교육연수위원장이 한국상담학회 분과학회의 교육연수위원장 중에서 선정하고, 그 외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교육연수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13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은 회의 소집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④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4조 【보칙】

- ① 교육연수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상임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2008. 3. 22)부터 발효한다.
- ②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